

세법연구 15 - 05

# 철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효과 및 문제점 검토

2015. 8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진

### 연구책임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홍성열 공인회계사

이형민 공인회계사

# 목 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철스크랩 산업 현황	11
1. 철 산업의 현황	11
가. 발전과정	11
나. 철강산업의 위상	11
다. 철스크랩 산업의 개관	12
2. 철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 사례	23
가. 사례1	23
나. 사례2	23
다. 무자료 거래 및 부가가치세 탈루에 의한 시장 교란 현상	24
III.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25
1. 일반적인 매입자납부제도의 개요 및 효과	25
가. 개요	25
나. 매입자납부제도의 효과	25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27
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현황	27
나. 구리스크랩 관련 매입자납부제도	27
다. 금지금, 금제품 및 금스크랩 관련 매입자납부제도	31
IV. 철스크랩 관련 제도 및 소상과 수집인 현황	34
1. 철스크랩 관련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34

가. 적용절차	34
나. 공제요건	35
다. 계산방식	36
2. 철스크랩 사업자 중 소상 및 수집인에 대한 분석	36
가. 구리스크랩 계좌 이용의 실태 및 철스크랩에 적용 시 예상 부작용	36
나. 소상들의 거래 형태와 매출세액의 이용 실태	37
다. 철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도입이 소상들에게 주는 영향	39
V.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42
1. 영국	42
가. 도입 목적 및 과정	42
나. 적용 요건	43
다. 적용 대상 및 방법	44
2. 오스트리아	46
가. 도입 목적 및 과정	46
나. 철스크랩 등 적용대상 및 제도 적용 방법	47
다.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효과	50
라.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원관리상 노출된 문제점	51
3. 독일	52
가. 도입 목적 및 과정	52
나. 철스크랩 등 적용 대상	54
다. 적용 방법	57
4. 핀란드	59
가. 도입 목적 및 과정	59
나. 적용 요건	59
다. 철스크랩 등 적용대상 및 제도 적용 방법	61
5. EU의 마진과세제도	64
6. 국제비교	67

VI. 시사점.....	70
1. 철스크랩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의 긍정적 효과.....	70
2.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개정 필요성.....	71
3. 철스크랩에 대한 전용계좌의 전면 사용 재고 필요성.....	73
참고문헌.....	75

## 표목차

〈표 Ⅲ-1〉 부가가치세 연도별 체납액 및 비율.....	26
〈표 V-1〉 오스트리아의 폐기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별표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재생원료 목록).....	48
〈표 V-2〉 독일의 매입자납부제도 대상 품목.....	54
〈표 V-3〉 독일의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중 귀금속 관련 품목 (Annex 4 to article 13b(2) No. 11 of the VAT Act).....	56
〈표 V-4〉 독일의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중 금속 재생원료 관련 품목 (Annex 3 to article 13b(2) No. 7 of the VAT Act).....	57
〈표 V-5〉 핀란드의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적용 대상 품목.....	61
〈표 V-6〉 주요국의 매입자 납부세액 국제비교표.....	67

## 그림목차

[그림 Ⅱ-1] 철스크랩의 공급구조.....	17
[그림 Ⅱ-2] 국내 철스크랩 유통 현황.....	18
[그림 Ⅱ-3] 국내 철스크랩의 유통구조.....	18
[그림 Ⅲ-1] 증가분 방식.....	29
[그림 Ⅲ-2] 당기분 방식.....	29
[그림 Ⅲ-3] 증가분 방식.....	32
[그림 Ⅲ-4] 당기분 방식.....	33



## I. 서론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분리된 형태를 채택하고 있어서 철스크랩 산업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유인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분리된 형태인 제도의 내재적인 한계이지만 철스크랩 산업은 그 유통과 처분에 있어서 다른 산업과 달리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더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내재적 한계가 잘 드러나는 특성이 있음
  
- 철스크랩 산업은 중간 유통단계에서 철스크랩의 수집에 있어서 특별한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고 처분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처분 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가가치세제도의 내재적 한계를 이용하여 탈세를 통한 부당이득을 추구하기에 좋은 특성을 가진 산업임
  
- 현재 「부가가치세법」의 한계를 이용한 부당이득의 수취 유인이 강한 관계로 철스크랩 산업에서는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다른 산업보다 높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선량한 사업자가 지고 있는 실정임
  - 현재의 「부가가치세법」은 철스크랩의 유통단계에서 부가가치세의 고의적인 탈루가 있을 경우 탈루의 주범인 사업체를 가려내지 못하고 거래한 정상적인 사업체에 책임을 지워 탈루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하고 있음
  
- 정상 사업체가 탈루 사업체의 부가가치세를 책임지고 부담하는 현재의 방식은 이익률이 높지 않은 정상 사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현실적으로 탈루 사업체를 완벽히 가려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의 탈루 책임을 매입자인 정상 사업체만 지고 국가는 부과만 하고 있는 현재 법률은 선량한 사업자의 사업 의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철강업계는 현재 「부가가치세법」이 정상적인 사업자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점을 들어 철스크랩 산업에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본 보고서의 목적은 현재의 철스크랩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탈세 현상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매입자납부제도가 철스크랩 산업에 도입되었을 때 나타날 효과와 문제점을 예상하여 효과를 높이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철스크랩 산업에서의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점 및 매입자납부제도와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의 금속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를 검토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제 I 장에서부터 제Ⅳ장까지 이루어짐
  - 제 I 장에서는 서론을 기술하고, 제 II 장 및 제 III 장에서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의 현황, 철스크랩 산업에서 나타나는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점, 매입자납부제도 및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함
  - 제 IV 장에서는 영국·독일·오스트리아·핀란드 등 주요 4개국에서 도입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국제 비교를 함
  - 제 V 장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의 주요 항목별 규정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함

## Ⅱ. 우리나라의 철스크랩 산업 현황

### 1. 철 산업의 현황<sup>1)</sup>

#### 가. 발전과정

- 철강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략산업으로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해왔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전후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저하된 산업이 되었음
  -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주요 철강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지속 발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
  - 그러나 철강업계의 전반적인 성숙기 진입과 전 세계적인 저성장, 저수익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의 경영실적도 하락세를 겪고 있음

#### 나. 철강산업의 위상

- 국민경제 기여도가 매우 높은 철강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핵심 기초소재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임
  - 국내 GDP의 3.4%, 수출의 6.7%, 제조업 고용의 3.2% 차지(2011년 기준)
  -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 수출산업에 소재를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성장 견인
  - 자동차 등 전방산업과 원료, 에너지 등 후방산업의 생산을 유발시키는 연계효과가 가장 큰 산업으로서, 주력산업의 세계 Top Class 진입에 지대한 역할 수행
-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조강생산국으로서 세계적인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국가임

---

1) 김재진, 『철스크랩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0.

- 한국의 조강생산량은 2012년 기준 총 69.1백만톤이며 전 세계 생산량의 4.6%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 2006년 이후 세계 6위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 철강소재 공급을 통하여 국내 외 철강수요를 충족시키며 외연도 확장하고 있음
- 2000년대의 한국의 조강생산은 연평균 4% 이상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으며 현대제철 고로 가동(2010) 이후 성장성이 증가하여 2013년에는 7천만톤 생산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생산량과 걸맞게 한국의 1인당 철강소비는 2011년 기준 1,157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임
  - 한국의 1인당 철강소비량은 1990년 468kg에서 2011년에는 2.5배 증가한 1,157kg으로 세계 1위의 위치에 있음
  - 이는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 수출산업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 대비 현저하게 높은 수준임

## 다. 철스크랩 산업의 개관

### 1) 특성 및 중요성

- 철스크랩은 3대 제철원료이며 원재료의 국내공급이 가능한 철강제조의 핵심 자원임
  - 철스크랩은 전기로 제강의 필수원료이며, 현재는 수입의존도가 30% 정도이지만 향후 국내 조달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철강생산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전기로 제강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는 철스크랩의 안정적인 수급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전체 철강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됨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철스크랩의 국내 공급 부족으로 수요량의 약 25%를 수입에 의존하며 전체 공급에서 자가발생분을 제외시 3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철스크랩은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큰 자원으로 원가 개념도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않아 국내 가격은 수입되는 철스크랩 가격에 연동되어 유통되는 시장구조를 가짐
  - 국내가격이 수입가격에 연동되고 있는 것이 큰 흐름이지만 일부 국내 수급 상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자원의 특성상 소규모의 과부족에 의해서도 가격 변동성이 큰 특성이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철스크랩의 총 수요규모는 12조원 정도이며 이는 제조업 국내 총수요의 0.9%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산업임
  - 철강산업의 생산액은 189.6조원(2010 국민계정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중 12.3%의 비중으로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철스크랩 산업은 국민계정상의 비중 및 제철원료 확보에서도 산업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임
  - 제조업 중 비슷한 규모로 생산하는 산업은 유리(0.8%), 고무(0.8%), 시멘트(1.0%), 정밀기기 산업 등이 있음
  - 요즘 주요 산업으로 인식되는 철도(0.1%), 항공(0.1%)은 물론이고 가죽신발(0.3%), 인쇄(0.6%), 컴퓨터(0.6%) 등에 비해서도 철스크랩 산업은 훨씬 큰 규모임
  
- 또한 철스크랩은 녹색성장시대를 대표하는 제품으로서 철스크랩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전기로 제강법은 고로법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 기존의 고로법은 철광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피할 수 없으나 전기로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음
  - 철광석, 원료탄 가격의 급등과 에너지 사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규제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고로법에 의한 철 생산은 다양한 경제적, 환경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됨
  - 그러나 전기로 제강은 고로법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위에 있으며 이는 철스크랩이라는 원재료의 특성으로 인한 것임
  - 그러므로 철스크랩은 전주기적 순환구조를 고려하고 있는 적극적인 형태의 재자원화에 해당하는 원료임

- 에너지 사용 및 폐기물 배출 저감(Reduce), 재순환(Recycle), 재사용(Reuse)이라는 3R로 통칭되는 전략에서도 철스크랩은 형상이나 제품 특성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간단한 분류 및 처리만 있으면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재활용자원(폐지, 폐플라스틱 등)보다 우위에 있음
  - 녹색성장, 재생산, 재사용의 개념이 강조되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폐쇄순환생산’이 발전하고 있으며 철스크랩은 이런 산업의 가장 좋은 사례임
    - 폐쇄순환생산은 자원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전주기적 생산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음
    - 그러나 폐쇄순환생산은 현재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요소의 재사용, 재제조, 재자원화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천연자원의 순환과 차단된다는 차이점이 있음
    - 즉, 폐쇄순환생산 시스템은 새로운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폐기물도 재자원화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품의 폐기과정 주기를 통틀어서 100% 재사용,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임
    - 폐쇄순환생산 시스템은 폐기물을 생산시스템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데 특징이 있으며, 철스크랩은 별도의 가공이나 소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생산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를 가진 자원임

## 2) 철스크랩의 세계적인 교역구조

### 가) 교역현황

- 세계 철스크랩 교역량은 수입 기준 1억 1,800만톤 정도이며, 주요 철스크랩 수출국은 CIS,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터키, 중국, 한국, 독일 등임
  - 철스크랩의 세계 교역량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2.6%의 성장세로 계속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중국·인도, 수출은 미국·일본에서 증가율이 높았음
- 권역별 철스크랩 교역흐름은 미국, 일본, CIS 등에서 철스크랩을 수출하여 물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 한국, 인도 등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은 2010년을 기준으로 터키가 1,916만톤을 수입하여 세계 전체 철스크랩 물량의 16.3%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중국, 한국이 수입이 많은 국가임
  - 2005년까지는 중국의 철스크랩 수입 증가속도가 연평균 22.0%로 가장 빠르고 독일도 연평균 15.4%였고 인도(8.3%), 터키(6.8%) 등의 국가가 세계 평균 증가속도(6.2%)를 웃돌았으나, 그 이후 2010년까지는 터키의 증가율이 오르고, 중국은 증가율이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3.5%의 증가세를 보여 상대적으로 철스크랩 수입 증가율이 완만하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국내 철스크랩 공급이 증가하면서 수입 물량을 대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나) 향후 국제 교역환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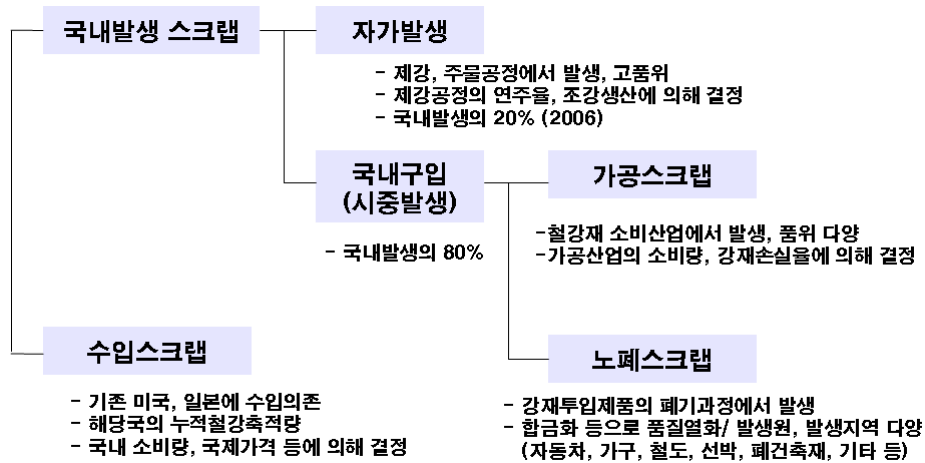
- 세계적으로 전기로 제강설비 신설 및 증설 움직임이 활발하고 주요 철스크랩 수입국인 중국, 인도 등의 전기로 증설은 철스크랩 수입수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국제 철스크랩 수급을 압박할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한 주요 철스크랩 수출국인 러시아의 대량의 전기로 설비 증설은 철스크랩의 러시아 자국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철스크랩 수출여력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각 철강 생산국이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위하여 전기로 제강설비 확충을 통한 철스크랩의 사용 비중을 늘리면서 철스크랩 세계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철스크랩 주요 수출국의 교역구조 변화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제 철스크랩 교역여건이 급격히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됨

### 3) 국내 철스크랩의 산업 개요

#### 가) 수급 구조

- 철스크랩은 공급원에 따라서 자가발생, 가공스크랩, 노폐스크랩, 수입스크랩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 스크랩의 주요 특성은 [그림 II-1]과 같음
  - 가공스크랩과 노폐스크랩은 국내에서 유통단계를 거치는 국내구입(시중발생) 스크랩으로 구분됨
  - 자가발생스크랩과 국내구입(시중발생) 스크랩은 다시 국내 발생 철스크랩을 구성함
  - 자가발생스크랩은 제강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의미함
  - 자가발생스크랩의 발생량은 제강공정이나 주물공장의 용해량과 최종제품의 양에 비례하며 별도의 처리가공이나 유통거래 없이 대부분 전량 회수되어 사용됨
  
- 자가발생스크랩은 주로 공정상의 연속주조비율과 총량 측면에서 조강생산량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며, 우리나라는 연주비율이 극대화되면서 자가발생 스크랩의 공급량이 조강생산에 비례하고 있음
  - 자가발생스크랩의 발생비율은 과거 조강생산 톤당 85~95kg 수준이었지만 2000년대 후반에는 톤당 발생량이 100kg을 초과하기도 함

[그림 II-1] 철스크랩의 공급구조



자료: 철강협회; 김재진, 『철스크랩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0.

#### 나) 철스크랩의 국내 자급 추이

- 철스크랩의 2005년 이후 국내 공급비율은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70% 미만으로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2년의 철스크랩 국내 공급비율은 2011년 74.9%에서 5.5%p 감소하여 69.4%를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감소요인은 경기부진이 지속됨에 따른 철강 수요산업으로부터의 철스크랩 발생량 둔화 및 제강사의 철스크랩 수입 확대 때문으로 파악됨

#### 다) 철스크랩의 수입량 추이

- 철스크랩 수입량은 2006년 이후에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2년 철스크랩 수입량은 1천만톤대를 돌파한 1,100만톤으로 집계되며 이런 수치는 전년의 수입량인 860만톤에서 17.4% 증가한 수치임
    - 일본으로부터의 철스크랩 수입이 전체 수입량의 48%를 차지하고 있음(2012년 기준 490만톤)

- 2012년 기준 주요 철스크랩 수입 대상국가 및 각 국가의 점유율은 일본(48%), 미국(26%), 러시아(9%)로 집계됨

4) 철스크랩의 국내 유통 현황

가) 유통구조 개요 및 현황

- 철스크랩 산업의 시장주체는 12개의 전기로 업체(제강사)와 12,000여개 수집상 및 공급업체로 구성되며, 이 업체들은 유통 규모에 따라 소상, 중상,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림 II-2] 국내 철스크랩 유통 현황



자료: 철강협회; 김재진, 『철스크랩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0.

[그림 II-3] 국내 철스크랩의 유통구조



출처: 철강협회; 김재진, 『철스크랩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0.

- 국내의 철스크랩 공급업체 중 대형업체는 2012년 기준 약 250~300개 정도이며, 대형 업체는 주로 철강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대형업체 중 매출규모 8천억원 이상인 업체가 15개에 달하며, 평균 영업이익률은 2.39%, 평균 고용규모는 업체당 43명으로 파악됨(2010년 기준)<sup>2)</sup>
  - 매출규모 100억원 이상 8천억원 미만인 업체는 22개로 평균 영업이익률이 1.77% (2010년 기준)이며, 업체당 평균 고용규모는 27명으로 파악됨
  
- 업체 중 중상은 최대 2천개로 추정되지만(2012년 기준) 대상보다 규모가 큰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분류나 제강업체 납품에 의한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큰 의의는 없음
  - 중상 이하 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 중상은 소형/수집상으로부터 철스크랩을 구매한 후 일정 규모 이상을 수집하여 대형업체 또는 납품업체에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함
  - 제강업체가 납품상에 대해서는 주로 독점적 거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대형업체와 비슷함에도 철강업체에 직접 납품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들이 중상에 일부 포함되어 있음
  
- 소형/수집업체는 최대 6천개 내외로 추정되며, 폐지, 공병 수집 등 일반폐기물을 동시에 취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물상으로 불리고 있음
  - 철강제품 가공공장에서 직접 철스크랩을 수거하는 소형업체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는 중상 이상인 경우가 많음
  - 다만 법인 형태를 유지하지 않는 업체는 탈세와 같이 불투명한 거래관행을 촉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있음
  
- 철스크랩은 가정, 폐선박, 공장, 폐기물처리센터, 폐건축물 등 발생원이 다양하며 발생처 → 수집상 → 중간상 → 납품상 → 전기로업체로 이어지는 단계를 거치고 있음

---

2) 조사대상 업체는 상장사 중심으로 업체당 평균 규모는 매출기준 1,449억원, 영업이익은 35억원 수준임(스크랩워치 조사자료 인용)

- 일본은 발생처 → 수집상(회수업자) → 가공업자 → 전기로업체로 이루어진 비교적 단순한 경로를 이용하는데, 이는 체계적인 수집 및 철스크랩가공이 가능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것임
- 우리나라는 철스크랩에 대해서 상품성을 인정하여 공공부문에서 체계적인 수거제도를 마련하지는 않고 있으며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지향하여 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그렇지만 현재 국내 철스크랩의 수거시스템은 선진국과 같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철스크랩의 가공산업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해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나) 유통단계별 활동주체: 납품상, 중(간)상, 소상

- 국내 철스크랩 거래의 주요 주체는 납품상 및 중상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구분은 제강업체에 대한 직접납품자격의 보유 여부에 따라 이루어짐
- 초기의 납품상제도는 제강업체들이 안정된 철스크랩 구매를 하기 위해 신용과 규모를 갖춘 철스크랩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하는 대리인제도로 도입되었음
  - 납품상제도는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제강업체 입장에서 스크랩 구입을 위한 거래비용의 절감, 수급변동의 리스크 경감에는 효과가 있었음
  - 그러나 동 제도는 철스크랩 가공을 담당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철스크랩 거래업체들도 제강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의가 있었지만 점차 독점적 거래로 인해 제강사가 공급자의 수익률이 통제하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중(간)상은 철스크랩의 중간거래를 담당하기 위하여 생겨났으며 인근 지역의 철스크랩 수집의 거점 기능을 하였음
  - 철스크랩 발생지로부터 납품상에 이르기까지의 거리 및 수송비용, 발생처 및 판매처 등 대한 정보의 불일치로 인한 각종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중상이 출현

- 발생처 및 철스크랩 가공업체 간의 정보불균형과 수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현하였으므로 초기에는 중(간)상의 규모는 납품상에 비해 소규모였으며, 단순한 거래중개만 담당하였음
  - 따라서 중간상은 철스크랩의 수집을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놓으면서 형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집업자가 사업범위를 확장한 경우에는 중간상의 역할도 담당하기도 하였음
  - 이들 중상은 야적장을 수백평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활용하여 월 1,000톤 이상을 거래할 수 있는 업체로 구분하고 있음
- 2000년도 이후에 국내 철스크랩 가격이 상승세를 보임과 동시에 저금리를 이용한 차입이 용이해지면서 새로운 주체들이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이들은 기존 중간상들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중간상의 범위와 역할을 변화시켰음
- 최근에 중간상들은 기존과 같이 단순히 대형 납품상에 판매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주체적으로 시장재고를 조절하며 가격을 형성하는 주요한 구성원이 되었음
  - 그리하여 부지규모나 스크랩 처리능력 면에서 납품상을 상회하는 규모의 중상이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사업장 규모가 2~3천평을 초과하는 부지를 다수 운영하는 중간상도 생겨남
  - 또한 일부의 경우에는 평균 철스크랩 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철스크랩을 구매한 후 기대가격 인상을 도모하는 사례도 생김
    -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한 스크랩을 판매할 때 적정이윤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 불순물을 혼입하거나 낮은 등급의 스크랩을 섞어서 판매를 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발생함
- 소상은 중장비 사용보다는 철스크랩의 단순운반을 위한 소형트럭(손수레), 집게 등을 보유한 업체들을 의미하며, 월 100톤 이하의 소량을 거래하는 업체들 또는 수집상으로 이루어짐

#### 다) 유통업체 수익률 동향

- 철스크랩 취급업체들의 증가와 이로 인한 경쟁 심화로 인해 국내 철스크랩 유통업체들의 수익률은 1990년대 10% 정도에서 2000년대 중반 5%대, 최근에는 1~2%대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임
  - 이와 같은 자료는 납품상들을 중심으로 한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중상 이하 수집상들의 수익률은 추산 자체가 어려움
  
- 국내 우선납품상의 이익률은 시중가격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제강업체가 구매단가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격과 구매가격간의 차이(판매 가격-구매가격)”는 제한적이거나 공개되어 산출이 가능함
  - 2000년대 초반까지는 납품상의 일반적인 유통마진(판매가격-구매가격)은 원칙적으로 5~10% 내외에서 결정되었으나 동일 품질의 스크랩인 경우 제강업체별 단가 차이, 어음 또는 현금결제 여부에 따라 일부 차이는 존재하였음
  - 전기로 제강업체들은 변형된 가격보상(인센티브, 계약고철, 보너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황에 따른 구매가격 변동이 잦아 납품상은 품질보다는 제강업체와의 협상력으로 단가를 결정하게 됨
    - 이에 따라 실현되는 유통마진도 최대 10%까지 차이가 생기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운영비용, 부지소유형태(자가 또는 임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부지를 소유하는 중상의 경우 운반비 포함 스크랩 ‘판매가격-구매가격’의 차이는 평균 10~15%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 2. 철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 사례

### 가. 사례<sup>13)</sup>

- 철스크랩을 판매하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현행 부가가치세제를 악용하여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부가가치세 포탈
  - 제조업체에 고철을 납품하기 위해 정상영업이 가능한 도매업체(간판업체)와 간판업체에 세금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매입자료를 공급하는 자료상(폭탄업체)을 설립
  - 자료상은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고철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음
  - 해당 고철을 도매업체에 시중가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
  - 도매업체는 제조업체에 해당 고철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
  - 제조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고철대금을 도매업체에 송금하고, 도매업체는 이를 수집상에게 송금
  - 대금을 송금받은 자료상은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뒤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탈루

### 나. 사례<sup>24)</sup>

-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포탈
  - 제조업체는 도매업체(간판업체)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인터넷뱅킹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정상거래로 가장
  - 도매업체는 송금받은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한 후 제조업체에 현금으로 반환
  - 도매업체는 자료상(폭탄업체)을 위장설립하여 자료상으로부터 고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상사업자인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
  -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

3) 김재진, 『철스크랩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0.

4) 김재진, 『철스크랩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0.

다. 무자료 거래 및 부가가치세 탈루에 의한 시장 교란 현상

- 무자료 거래 및 매출 부가가치세 탈루는 철스크랩 가격을 정상가격이 아닌 부가가치세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형성되게 하는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관련 무자료 및 부가가치세 탈루 업체는 철스크랩 판매시 부가가치세만큼 가격을 낮춰서 매출하여 정상적인 세금을 가산하고 판매가격을 산출하여 시장에 출시하는 업체들에 피해를 끼치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음

### Ⅲ.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 1. 일반적인 매입자납부제도의 개요 및 효과<sup>5)</sup>

##### 가. 개요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매입자가 직접 본인의 소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이며 거래징수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기존의 방식은 공급하는 사업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는 것으로서 공급자가 징수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시 부가가치세가 탈루됨
-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적용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금계산서에 명시해야 하고 신고·납부는 매입자에게 이전시킴
- 매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기존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본인이 납부하고 본인이 다시 받는 형태가 됨

##### 나. 매입자납부제도의 효과

###### 1) 자료상 근절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 효과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매입자가 본인의 매입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담세자와 납세의무자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자료상 및 폭탄업체 문제를 근절 가능함

5) 김재진, 『철스크랩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0.

- 기존의 전단계세액공제법에서는 관계없이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자료상 및 폭탄업체는 징수한 매출세액을 탈세함으로써 국가는 부가가치세 세수 손실을 보게 됨
- 그러나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면 매입자가 매입자 본인의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납부하게 되므로 자료상 및 폭탄업체들은 탈루할 세금이 없어지게 됨

## 2) 체납방지효과

-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및 체납비율의 추이는 다음 표와 같음

〈표 Ⅲ-1〉 부가가치세 연도별 체납액 및 비율

(단위: 억원, %)

연도	부가가치세 징수 결정액	당해 연도 신규 체납액	체납비율
2013	624,182.65	74,484	11.9
2012	623,337.01	71,360	11.4
2011	593,584.04	67,070	11.3
2010	549,427.33	62,740	11.4
2009	525,948.76	62,720	11.9
2008	514,594.58	61,131	11.9
2007	462,484.92	62,077	13.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매출세액이 매입자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되므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므로 나타나는 부가가치세 탈루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됨
- 부가가치세는 납부단계에 있어서 매출세액을 징수한 공급자의 무자력을 이유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만 매입자납부제도하에서는 공급자에 의한 매출세액 징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임

##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 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현황

- 우리나라는 2008년에 금지금 및 금제품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2014년 1월에 구리스크랩 관련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및 2015년 7월 금스크랩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 금 관련 매입자납부제도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이며 구리스크랩 관련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가 관련된 대표적인 조문임
- 우리나라 매입자납부제도의 특징으로는 거래 관련 지정은행을 정해 놓고 해당 은행의 계좌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동 제도에 관련 사업자들이 전부 참여할 경우 IT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제도의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음
  - 그러나 IT기술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동 제도에 실제로 사업자들의 참여가 다수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하기가 어려움

### 나. 구리스크랩 관련 매입자납부제도<sup>6)</sup>

- 철스크랩에 관련하여 매입자납부제도가 신설될 경우 금보다 거래량이 많고 유통구조가 유사한 구리스크랩 관련 제도를 참조할 수 있음
  - 매우 고가의 제품인 금은 고물상이나 철거 현장에서 유통되는 구리나 철과는 다른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리스크랩에 대한 제도가 좀 더 철스크랩의 제도 신설에 도움이 될 것임
- 구리스크랩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는 사업자 간에 구리스크랩 등을 거래할 때 매출자

---

6) [www.cu-account.co.kr](http://www.cu-account.co.kr)

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어 있음

- 동 제도는 현행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분리된 부가가치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 사례 방지, 구리스크랩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세원 양성화 및 유통구조 정상화를 통한 자원재활용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구리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의 적용대상은 구리스크랩 개인 또는 법인인 사업자 간 거래에 한하며 소매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음
- 제도의 적용 대상 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것들임<sup>7)</sup>
  -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 각 사업자들은 현재 구리스크랩 관련 지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이용을 시작하면 됨
- 구리스크랩 계좌를 통한 결제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짐
  - 거래 시 매입자는 제품가액과 부가세를 매입자의 구리거래계좌에 입금
  - 기업인터넷(폰)뱅킹 또는 신한S부가세앱을 이용하여 매매결제 실행
  - 제품가액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자동입금 처리
    - 단,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만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결제 가능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

- 지정 계좌로 입금된 부가가치세는 매출 부가가치세 내에서 실시간 환급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며 동 특징을 포함한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임
  -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입금된 매입자의 부가가치세액은 그 매입자가 구리스크랩 등을 매출할 때 그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
    - 이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매출자의 사업자금이 동결되어 현금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수단임
    - 구리스크랩 수입업자는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함
    - 환급되지 않고 계좌에 잔류한 세액은 예정이나 확정신고 납부기한에 구리스크랩 사업자 중 공급자별로 국고에 입금됨
  
- 제도 참여율을 증진하기 위해 계좌 사용 시 사업자가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경우,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가 가능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림 Ⅲ-1] 증가분 방식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당해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 - \text{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text{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 \times 50\%$$

자료: <http://www.goldaccount.co.kr/info/info.html>

[그림 Ⅲ-2] 당기분 방식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text{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 \times 50\%$$

자료: <http://www.goldaccount.co.kr/info/info.html>

- 구리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는 참여율 향상을 위해 불이익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가액에 대한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 납부에 대한 미납가산세 운영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관련 사업자들이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으면 해당 매입자와 매출자에게 제품가액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음
  - 계좌 미사용으로 인하여 입금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동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됨
  - 만약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한 경우에는 1일당 3/10,000(연환산 10.95%)의 미납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부가세 지연으로 인한 미납가산세는 예정 및 확정 신고기간까지만 부과하고, 이후에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단계로 넘어가서 불이익을 부과함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구리스크랩 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음
  - 계좌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국고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 세액'란에 금액만 기재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에 관할 세무서로 신고하는 것임
    - 분기별 국고입금예정세액 확인은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한S부가세앱을 통하여 할 수 있음
  
- 구리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례기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매입자의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구리스크랩을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
  - 특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일반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함
  - 신고 시 구리 매입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기재된 매입세액을 구리거래계좌에 납부한 매출세액에서 환급해 줌

- 또한 전용계좌 납부세액을 예정고지에서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실시간 납부 확인이 가능한 제도의 장점이 이용되게 하고 있음
  - 예정고시 세액을 결정할 때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국고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 결정함
  -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 4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리거래계좌에서 납부된 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하고 예정고시세액은 결정을 취소함

#### 다. 금지금, 금제품 및 금스크랩 관련 매입자납부제도<sup>8)</sup>

- 금지금, 금제품 및 금스크랩 관련 매입자납부제도의 적용 대상 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 금제품,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정하고 있음<sup>9)</sup>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의미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의미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란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의미함
  - 단, 14K 미만의 금관련 제품은 현행 세법에서는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단, 거래가 사업자 간 거래인 경우에 한하여 제도를 적용하며 소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금지금 거래의 결제방법은 매입자가 제품가액과 부가세를 매입자 본인의 금거래계좌

8) 국세청과 신한은행의 「금 관련 제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안내」, <http://www.goldaccount.co.kr/>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에 입금하면 제품가액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자동입금 처리되는 것으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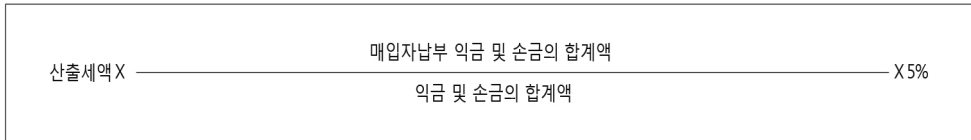
- 동 제도이용 시 지정금융기관에 입금된 부가가치세는 관련 사업자의 현금 흐름의 원활함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환급되고 있음
  - 지정금융기관에 입금된 매입자의 부가가치세는 그 매입자가 금관련 제품을 매출할 때 그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됨
  - 금지금 수입업자는 금지금 수입 시 세관 또는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정해진 방식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
  - 금지금 제련업자는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그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70%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받을 수 있음
  - 환급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세액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에 금사업자(매출자) 별로 국고에 입금
  
- 금거래계좌 사용시 사업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받음
  - 금지금 및 금제품은 2009년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 적용하며 금스크랩은 2015년 7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함

### [그림 Ⅲ-3] 증가분 방식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당해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 - \text{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text{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 \times 50\%$$

자료: <http://www.goldaccount.co.kr/info/info.html>

[그림 Ⅲ-4] 당기분 방식



자료: <http://www.goldaccount.co.kr/info/info.html>

- 동 매입자납부제도는 참여율 향상을 위해 불이익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가액에 대한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 납부에 대한 미납가산세 운영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관련 사업자들이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으면 해당 매입자와 매출자에게 제품 가액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음
  - 계좌 미사용으로 인하여 입금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동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됨
  - 만약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한 경우에는 1일당 3/10,000(연환산 10.95%)의 미납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부가세 지연으로 인한 미납가산세는 예정 및 확정 신고기간까지만 부과하고, 이후에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단계로 넘어가서 불이익을 부과함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관련 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음
  - 계좌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국고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 세액'란에 금액만 기재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에 관한 세무서로 신고하는 것임

## IV. 철스크랩 관련 제도 및 소상과 수집인 현황

### 1. 철스크랩 관련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sup>10)</sup>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특정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6년 말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의제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 이는 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이하 “중고품”)의 재활용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고품에 기포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다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중복 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임
  -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도 중고품의 취득가액에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것임
  - 중고품의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가. 적용절차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과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신고서 작성 시 판매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며 기타 세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정보를 기입해야 함
  - 2004년 1월 1일부터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중 ‘취득연월일’이 삭제됨

10) 박명호·이형민·유지선, 『주요국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및 마진과세제도 운영현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6.

- 한편, 납세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누락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및 과세관청의 경정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나. 공제요건

-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은 주요 사업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함
  -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써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중고품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등의 재활용폐자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 － 여기서 중고자동차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함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적법한 거래상대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및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임

- 법원 등으로부터 재화를 경락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다. 계산방식

-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에 5/10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6년 1월 1일 부터는 3/103),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9/10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다만, 과세기간별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을 제한함
  - 공제한도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80%<sup>11)</sup>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2. 철스크랩 사업자 중 소상 및 수집인에 대한 분석

### 가. 구리스크랩 계좌 이용의 실태 및 철스크랩에 적용 시 예상 부작용

- 구리의 경우 판매가가 1Kg당 6,000원 근처로 고가이며 수집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철보다는 관리가 쉬움
- 소상단계의 고물상에서 구리는 2달 이상 수집 후 출하하지만 철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 수집 및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유통물량이 많음
- 현재 구리스크랩에 대해서 매입자납부제도가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고 있고 전용계좌제도도 실행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소상들에게는 실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음

11) 2007년 말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90% 적용

- 소상들은 세무에 대해서 노력을 투입하기 어렵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세무 및 회계를 전담할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현실임
- 또한 소상들의 직원들도 대부분 나이가 많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IT를 이용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서 제도에 편입되기를 포기함
-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소상들은 구리스크랩에 대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개설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결국 소상들에 의해서 수집되는 구리스크랩은 전용계좌를 운영할 수 있는 좀더 큰 규모의 사업자에게 자료 없이 넘겨지고 있는 실태임
  - 전용계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넘겨질 때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들은 무자료로 거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넘겨진 구리스크랩은 무자료 거래의 원천적인 상품으로 이용될 수 있음

#### 나. 소상들의 거래 형태와 매출세액의 이용 실태

- 소상들은 철스크랩 매입 및 매출 시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지불받고 있음
  - 수집인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할 때에도 현금으로 하고 있으며 수집된 물품을 매출할 때에도 즉시 현금으로 받고 있음
- 전액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수집인들은 개인들인 경우도 다수이기 때문에 외상이나 신용카드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철스크랩 매출 시에 곧바로 현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임
- 매출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받고 부가가치세 세금신고가 임박할 때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받아서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있음

- 그러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들은 매출세액을 매출 시 바로 수령하고 있음
- 소상공들은 매출세액에 대해서 동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금액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잘 보관하거나 부가세 납부시점 시 한꺼번에 받아서 바로 납부하고 있음
  - 매출 세액을 운영비로 사용하다가 부가가치세 납부시점에 큰 금액을 한번에 마련해야 하는 것에 더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매출세액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특성을 보임
-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시 매출세액을 운영비로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압박 발생 가능성 대한 실태 분석을 좀 더 실질적으로 광범위하게 하여 해당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어려움을 줄 가능성을 다시 측정해 볼 필요가 있음
- 오히려 매입자납부제도는 매출부가세에 대한 소상공의 부담을 없애주고 기장 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들의 납세순응비용을 낮춰주어 순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음
  - 매출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는 이유는 매출세액을 3개월에 한번씩 받다가 거래처에서 문제가 생겨 매출세액을 받지 못하여 소상공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며 납부 시 추가적인 행정비용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임
- 결국 기존의 다른 제도가 보완된 상태에서 매입자납부제도가 도입될 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선의의 소상공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에 필요한 납세순응비용을 낮출 수 있음

#### 다. 철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도입이 소상들에게 주는 영향

- 소상들은 철스크랩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매입에 대한 제도가 보완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출자료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정당한 매입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집자들의 인적사항이 필요하지만 수집자들은 본인들의 사정으로 인해 또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필수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 이렇게 수집자가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아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매입원가 불인정으로 인한 손실은 소상들이 지게 됨
- 수집인들이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필요한 인적사항 정보 제공을 꺼리는 이유는 철스크랩 수집에 있어 산업 환경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도 있음
- 과거에는 철스크랩 수집업자들이 철거 등을 통해 수집을 해올 때 철거 인건비를 받으며 무료로 철스크랩을 수집했으나 현재는 인건비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철스크랩을 일정 가격을 지불하고 매입해오는 형태가 되었음
- 사업자등록 없이 수집하는 개인들이 철스크랩 매입가격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철스크랩 수집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변화는 자연히 다음 거래인 소상과의 거래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필요한 인적사항 제출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함
  - 왜냐하면 과거에는 인건비를 받아가면서 무료로 철스크랩을 수집하여 소상에게 의제매입세액공제용 정보를 제공하여 수집인의 소득을 노출시켜 소득세를 부과받아도 이윤이 남았음
  - 그러나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소득을 노출시킬 경우 매입원가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소상에게 판매하는 금액 모두가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를 납부하면 남는 이윤이 없거나 오히려 적자가 되는 구조임
  - 이에 따라 수집인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게 되는 것임

- 세무당국은 수집자의 필수 인적사항 등 정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매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이런 현실 때문에 수집자로부터 매입을 하는 소상공들은 매입 금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매출 시 정당한 매입원가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 측면에서도 불합리하게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임
-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정당한 매입원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매입철스크랩들은 결국 매출 시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매출을 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되어 무자료 거래의 원천상품이 되어버릴 수 있음
  - 이렇게 소상공 단계에서부터 국가에 의해 매입을 인정받지 못하면 추후 유통단계에서도 무자료로 거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됨
  - 무자료로 거래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매입원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업체는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정당한 매입을 인정받지 못하여 실제보다 과다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담하게 됨
  - 이러한 경우 자금 압박에 처하여 생계에 곤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소상공들은 당연한 수순으로 무자료 거래에 가담하게 되는 것임
- 결과적으로 무자료 거래의 원천이 되고 있는 상품들은 세무당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및 매입원가 인정 요건으로 인해 상당수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무자료 거래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폭탄업체가 생겨 부가가치세가 탈루되는 현상을 방지하려면 그 거래의 근원인 소상공 단계에서의 의제매입 공제제도 및 매입원가 인정 요건을 개정해야 하는 것임
- 이러한 소상공 단계에서의 무자료 거래의 원천상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 채 매입자납

#### Ⅳ. 철스크랩 관련 제도 및 소상과 수집인 현황 41

부제도를 도입하고 전용계좌를 도입하는 것은 더욱더 많은 무자료 거래를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 세원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V.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 1. 영국<sup>12)</sup>

#### 가. 도입 목적 및 과정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부가가치세제도 중 소비형이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분리된 형태로 부가가치세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고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는 달리 마진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영국의 경우 회전목마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6월 1일부터 “£ 5,000 이상의 휴대폰 및 컴퓨터칩 공급”에 대하여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영국의 1999~2000년 동안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TIC Fraud)」로 인한 세수손실이 해마다 최소한 10억파운드에 달하였으며, 2005~2006년에는 20억~30억파운드로 절정에 이르게 됨
  - 2005~2006년 영국의 실세수는 730억파운드로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TIC Fraud)」로 인한 세수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2.7~4.1%임
- 2000년 9월, 영국 국세청(HMRC)은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TIC Fraud)」를 차단하기 위하여 탈세업자를 적발하고 기소할 목적으로 VAT 등록절차 강화, 부가가치세 환급 시 입증 확대 등의 범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게 됨
  - 이러한 전략이 추진된 2000~2001년과 2001~2002년에는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TIC Fraud)」가 감소하였으나 2004~2005년에 11.2억~19억파운드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12) 김재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한 거래징수 효율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0. 12.

- 영국 정부는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TIC Fraud)」를 차단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 운영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도입하였으나 사기업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한계에 도달함
  - 이에 따라 2006년 2월, 영국 정부는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TIC Fraud)」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기와 주로 연관되는 재화에 대하여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 적용을 허용해 줄 것을 EU위원회에 요청함
  - EU VAT Directive하에서는 공급자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도입은 이를 위반하게 되므로 EU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함
  
- 2007년 4월 16일, EU위원회는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를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영국 정부의 요청을 승인함
  - 다만, 동 제도의 적용대상을 영국 정부에서 최초 요청한 광범위한 범위의 재화가 아니라 휴대폰(mobile phones) 및 컴퓨터칩(computer chips)으로 제한함
  - 영국에서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TIC Fraud)」에 가장 흔히 이용되는 재화는 휴대가 용이하고,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운반이 가능하며, 고가인 경우임
  
- 영국 정부는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의 시행과 운영상의 조치들로 인하여 2007~2008년 동안 5천만파운드(한화 약 859억원)의 세수손실을 방지할 것이라고 기대함
  - 최근 『The Mirrlees Review』에서는 부가가치세 관련 무역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함
    -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 도입
    - 수출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영세율제도 폐지 또는 축소

## 나. 적용 요건

- 적용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는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동 제도가 적용되는 재화를 구매한 사업자는 영국 국세청(HMRC)에 적용대상 재화의 구매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sup>13)</sup>

- 즉,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하에서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는 특정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영국 국세청(HMRC)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요건 1] 영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재화의 공급에 한하므로 다음의 경우에는 동 제도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함
    - 매입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 다른 EU회원국으로의 재화의 이동
    - EU회원국 이외의 국가로의 수출
  - [요건 2] 부가가치세 포함 전 가격 기준으로 5천파운드 이상이어야 함
    - 동 금액은 송장(invoice)을 기초로 하며, 송장에 기재된 모든 적용대상 재화의 총 가격이 5천파운드 이상일 경우 적용됨
    - 다만, 적용대상 이외의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이 적용대상이 포함된 송장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대상 이외의 재화 및 서비스는 동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함
  - [요건 3]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업 목적으로 당해 재화를 구입하는 것이어야 함
    - 따라서 동 제도가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매입자의 부가가치세등록번호를 확보하고, 그 번호가 유효하고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다. 적용 대상 및 방법

### 1)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를 적용받는 공급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 그러나 공급자는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송장(invoice)에 명시하여야만 함

---

13) “Specified Goods and Excepted Supplies, Order 2014”, The Value Added Tax, Section 55A

- 공급자는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가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 시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송장(invoice)에 명시하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동 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송장(invoice)에 주석을 달아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 주석으로 기재하는 문구에 대하여 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영국 국세청(HMRC)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제시하고 있음
    - 매입자가 국세청(HMRC)에 "X의 매출세액을 납부함(Customer to payout tax of "X to HMRC, UK customer to pay O/T of "X to HMRC)
  
-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가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최초로 공급이 이루어진 날에 대하여 웹 기반의 RCAL시스템((Reverse Charge SalesList System)을 이용하여 국세청(HMRC)에 통지하며, 계약서상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하여야 함
  -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시 매입자납부제도 판매목록(Reverse ChargeSales Lists: RCSLs)을 작성하여야 함
    - 영국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매 3개월마다 이루어짐

## 2) 공급받는 자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하에서 공급자가 아닌 매입하는 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액은 공급자가 발생한 부가가치세 송장(invoice)에 기재되어야만 하며, 동 세액은 공급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함
  -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통상적인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를 적용받는 매입자가 해당 재화를 다른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에게 영국 내에서 공급하고 그 가액이 5,000파운드 이상인 경우, 동 제도는 이후의 거래에도 적용됨

### 3) 적용대상 재화

- 2007년 도입 시에는 휴대폰(mobile phones) 및 컴퓨터칩(computer chips) 두 품목에 대해서 적용을 한정하였으나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의 추가 개정으로 탄소배출권 및 전기와 가스가 매입자납부제도의 대상 재화로 추가되었음
  - 2010년에는 탄소배출권과 관련 거래가 적용 대상으로 추가됨<sup>14)</sup>
  - 2014년에는 EU회원국의 관할에 설치된 천연가스 설비 및 전기 설비를 통하여 공급되는 가스와 전기가 적용 대상으로 추가됨<sup>15)</sup>

## 2. 오스트리아<sup>16)</sup>

-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같이 소비형 부가가치세이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분리된 형태로 부가가치세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고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는 달리 마진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sup>17)</sup>

### 가. 도입 목적 및 과정

- 오스트리아는 국내에서 범죄조직이 구리, 알루미늄, 철 등 재활용 금속폐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세를 통한 이익 추구 현상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했음
- 범죄조직은 일반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집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EU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보하여 부가가치세 탈루를 위한 체계를 구축함

14) "Specified Goods and Excepted Supplies, Order 2010," The Value Added Tax, Section 55A

15) "Specified Goods and Excepted Supplies, Order 2014," The Value Added Tax, Section 55A

16)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생원료(동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의 독일 등 해외 사례 조사」, 2013. 2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17) <http://www.kpmg.com/global/en/issuesandinsights/articlespublications/vat-gst-essentials/pages/austria.aspx>

- 그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폐금속 자재를 수집하여 중상에게 공급하고 대금의 20%를 매출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폐업함
-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스트리아 연방재무부는 매입시점에서 국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EU사업자등록번호를 과세당국에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실무에서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업체들이 거부함
- 이에 다른 방안으로 연방재무부는 매입자가 거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과세당국이 해당 세금을 바로 환급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업체들이 거부함
  - 업체들은 동 방안 또한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고 바로 돌려받더라도 일정수준을 상회하는 운영자금을 유지할 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부하였음
- 마지막 방안으로 연방재무부는 납세의무를 매입자로 변경하고 월간 부가세신고서상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동시에 기재하는 방식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 합의의 결과로 오스트리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9호(Schrott-Umsatzsteuerverordnung, 2007년 6월 15일)에 따라 “폐기물 거래중 매입자에게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거래에 대한 연방재무부령(폐기물-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제정하여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함
  - 시행령 제320호(Schrott-Umsatzsteuerverordnung, 2012년 9월 27일)를 추가하여 보완하여 제도를 보강함

## 나. 철스크랩 등 적용대상 및 제도 적용 방법

### 1) 적용대상 재화

- 오스트리아의 매입자납부제도의 적용대상 거래는 법령의 별표에 적시된 금속에 대한

공급뿐 아니라 관련 금속의 분류, 파쇄, 분쇄(해체 포함) 및 압축 등의 기타 용역도 포함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폐기물-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별표(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재생원료의 목록)

〈표 V-1〉 오스트리아의 폐기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별표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재생원료 목록)

순번	물품	품목 분류번호 (HS Code)
1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입상의 슬랙(슬랙 샌드)	2618 00 00
2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슬랙·드로스(입상의 슬랙을 제외한다)·스케일링 및 기타 폐기물	2619 00
3	회와 잔재물(비소, 금속, 또는 그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에 한하며,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	2620
4	플라스틱의 폐기물·페어링과 스크랩	3915
5	고무의 폐기물·페어링 및 스크랩(경질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들 분말 및 입상	4004 00 00
6	회수한 지 또는 판지(폐기물과 스크랩)	4707
7	닝마(사용하던 것 또는 신품의 것에 한한다) 및 끈·코디지·로프·또는 케이블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한다)	6310
8	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폐기물과 스크랩, 유리괴	7001 00 10
9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폐기물과 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폐기물과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7112
10	철의 폐기물과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7204
11	동의 폐기물과 스크랩	7404 90
12	니켈의 폐기물과 스크랩	7503 10
13	알루미늄의 폐기물과 스크랩	7602 00
14	연의 폐기물과 스크랩	7802 00 00
15	아연의 폐기물과 스크랩	7902 00 00
16	주석의 폐기물과 스크랩	8002 00 00

〈표 V-1〉의 계속

순번	물품	품목 분류번호 (HS Code)
17	텅스텐의 폐기물과 스크랩	8101 97 00
18	수연의 폐기물과 스크랩	8102 97 00
19	탄탈의 폐기물과 스크랩	8103 30 00
20	마그네슘의 폐기물과 스크랩	8104 20 00
21	코발트의 폐기물과 스크랩	8105 30 00
22	창연의 폐기물과 스크랩	8106 00 10
23	카드늄의 폐기물과 스크랩	8107 30 00
24	티타늄의 폐기물과 스크랩	8108 30 00
25	지르코늄의 폐기물과 스크랩	8109 30 00
26	안티몬의 폐기물과 스크랩	8110 20 00
27	망간의 폐기물과 스크랩	8111 00 19
28	베릴륨의 폐기물과 스크랩	8112 13 00
29	크롬의 폐기물과 스크랩	8112 22 00
30	탈륨의 폐기물과 스크랩	8112 52 00
31	니오브(콜롬비움), 레늄, 갈륨, 인듐, 바나듐 및 게르마늄의 폐기물과 스크랩	8112 92 21
32	합금의 폐기물과 스크랩	8113 00 40
33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폐기물과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8548 10

자료: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생원료(동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의 독일 등 해외 사례 조사」, 2013. 2.

- 동 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자는 매입자와 매출자를 가리지 않으며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모두 대상임

2) 신고 및 납부 방법

- 공급자는 매입자의 EU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한 매입자 납부방식(RCS-format)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는 매입자가 납세의무자임을 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구 중 하나를 명시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금액은 표시를 금지하여 착오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함
  - 문구 예시1: '1994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 문구 예시2: '납세의무가 매입자에게 이전됨'
  - 문구 예시3: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 system)의 적용'
- 매입자는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속에 대해서 일반거래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20%의 부가세 간주납부와 간주매입세액공제를 동일한 신고서에 기재하면 됨
- 공급자는 월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매입자 납부방식의 적용으로 인해 본인의 납세의무가 이전된 거래를 구분하여 신고하게 하여 매입자와 공급자 사이의 상호 대사를 통한 확인이 가능하게 됨
- 매입자가 동 제도에 관련한 거래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세의무는 공급자에게 다시 이전되어 과세당국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함
  - 매입자가 거래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납세와 매입세액공제가 모두 누락되는 상황이 됨

## 다.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효과

### 1) 적용대상 재생원료의 구분 관련 부담 증가 문제

- 오스트리아는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받는 폐기물에 대한 구분 기준을 HS-Code로 하고 있음
- 폐기물 중간수집상들은 EU 차원의 거래를 다수 했었기 때문에 HS-Code를 이용한 분류에 익숙하며 이러한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적용대상 품목의 구분 및 공급자의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오스트리아 당국의 이러한 평가와는 다르게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재생원료의 구분에 있어서 많은 납세순응 비용의 발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특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매입자 납부제도의 정착을 위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대표적임
  - 매입자납부제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교육
  - 매입자납부제도 대상 사업자들에 대한 홍보 활동
  - 자료상 파악을 위한 위험관리 강화

## 2) 특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성과

- 오스트리아 연방재무부는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재생 원재료를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탈세를 하는 공급업자들을 재활용 산업에서 배제하게 되었다고 평가함
- 그러나 부가가치세 탈세를 통한 이익추구 거래가 다른 산업분야로 전이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2007년 입법 이후 금함유 금속에 대한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세 사건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금함유 금속거래에서도 2013년 1월 1일에 매입자납부제도가 도입됨
  - 해당 사건은 자료상에서 순금바를 면세로 구입한 후 구리 폐기물과 섞어서 과립형태의 금속으로 바꾸어 이를 금 제련회사로 매출한 후 20%의 매출부가세를 징수하여 폐업하고 도주한 사건임

## 라.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원관리상 노출된 문제점

- 매입자납부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의 특징이었던 거래단계별 부가가치세 납부가 생략되고 최종거래단계에서 1회만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각 단계에서 작용하는 자기감시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최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탈세가 이루어질 경우 그 규모가 집적되어 탈세 규모가 전단계세액공제법보다 커질 위험이 존재함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요구될 수 있고 그런 추가적 행정 적용 과정에서 선량한 사업자들이 사업 과정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존재함
- 그리고 EU회원국들 중 같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서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경제적 왜곡 효과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매입자납부제도와 관련한 EU의 지침이 각 회원들에게 제도의 도입을 강제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국가들마다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3. 독일<sup>18)</sup>

-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부가가치세제도 중 소비형이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분리된 형태로 부가가치세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고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는 달리 마진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sup>19)</sup>

#### 가. 도입 목적 및 과정

- 독일은 2001년에 일부 재화 및 용역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였음

18)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생원료(동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독일 등 해외사례 조사」, 2013. 2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19) <http://www.kpmg.com/global/en/issuesandinsights/articlespublications/vat-gst-essentials/pages/germany.aspx>

- 매입자납부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은 비거주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및 특정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위한 것임
  - 비거주 사업자가 독일 내에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기 어려운 관계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함
  - 특정 품목의 경우 사업자들이 거래대금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등의 조세탈루 행위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매입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
  
- 특정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독일 내 거주자들 간의 거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그 대상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음
  - 2003년도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독일에서의 부동산 거래 전반 및 건물의 건축·수리·유지·철거 등의 용역 공급 등으로 매입자납부제도의 대상이 확대됨
  - 2010년도에는 탄소배출권 거래, 냉난방 공급, 특정 재생원료, 철 및 비철 금속 폐기물, 플라스틱·고무 등의 폐기물, 전지 폐기물 등의 재화 공급이 매입자납부제도 대상으로 포함됨
  - 또한 2010년도 개정에는 건물 및 건물 일부분에 대한 청소용역 등 일부 용역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그 외연이 확대됨
  - 2011년도에는 이동전화기 및 일부 IC(집적회로) 공급 거래에 대해 단일 거래금액이 5,000유로 이상인 경우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추가됨
  - 2014년도에는 게임 콘솔, 태블릿 컴퓨터 및 귀금속 공급 등에 대해서도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함

## 나. 철스크랩 등 적용 대상

### 1) 매입자납부제도 적용 대상 개관

- 2011년까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비거주자가 독일 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때 매입자가 독일 거주자인지 여부는 관계없음)
  - 독일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아래와 같은 품목

〈표 V-2〉 독일의 매입자납부제도 대상 품목

적용 대상 품목	관련 법령
부동산의 공급	article 13b(2) No. 3 of the VAT Act
담보물의 공급(goods that were under a security right)	article 13b(2) No. 2 of the VAT Act
건설 관련 활동	article 13b(2) No. 4 of the VAT Act
건물에 대한 청소 용역	article 13b(2) No. 8 of the VAT Act
탄소배출권(CO <sub>2</sub> emission certificates) 공급	article 13b(2) No. 6 of the VAT Act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 공급 거래	article 13b(2) No. 9 of the VAT Act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비디오게임 콘솔 및 관련 기기, 집적회로 등으로서 거래금액이 5,000유로 이상인 경우	article 13b(2) No. 10 of the VAT Act
가스 및 전기 공급(일반적으로 전기의 경우 공급자 및 구매자 모두 재판매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가스의 경우 매입자는 재판매자여야 함)	article 13b(2) No. 5 of the VAT Act
특정 귀금속류(은, 백금, 니켈, 알루미늄, 납, 아연 등)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거래금액이 5,000유로 이상인 경우	article 13b(2) No. 11 of the VAT Act; Annex 4 to the VAT Act
특정 재생원료(waste)의 공급	article 13b(2) No. 7 of the VAT Act; Annex 3 to the VAT Act

- 다만, 해외 거주사업자의 공급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자납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개인운송방식의 승객 운송
  - 택시를 이용한 승객 운송
  - 항공을 통한 승객 운송
  - 독일 국내의 전시회 또는 회의와 관련된 입국
  - 독일 국내의 전시회 또는 회의와 관련된 독일 주관기업이 비거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 선상, 기내 및 기차에서 이루어지는 식음료 제공 서비스
- 독일에서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되는 거래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3~7% 정도로서 상당 수준의 영향력을 갖고 있음<sup>20)</sup>
  - 전체 독일 경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합계(Gross Value Added, “GVA”) 대비 매입자납부제도에 의한 과세표준(taxable basis)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수준임
  - 독일에서의 전체 부가가치세 수입(VAT receipt) 대비 매입자납부제도에 의한 부가가치세 수입의 비중은 약 7% 정도임

## 2) 철스크랩 등 금속 관련 매입자납부제도 적용 현황

- 독일에서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되는 특정 품목들 중 금속과 관련된 부분은 소정의 귀금속의 공급 및 철스크랩 등 금속 재생원료(waste)의 공급으로 크게 구분됨
  - 이러한 금속 관련 물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별표에서 해당 물품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으며, 각 세부 품목마다 관세목적상의 분류기호(HS code)와 대조함으로써 적용대상 물품 종류를 명확히 지정하고 있음
- 귀금속류의 경우 해당 금속 종류별로 대상을 특정하고 있으며, 각 품목마다 원료 또는 반가공 상태, 파우더 형태 등 여러 가지 형상을 포함하고 있음

20) European Commission,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and impact of the optional ‘Reverse Charge Mechanism’ within the EU VAT system,” November 2014, p.123.

〈표 V-3〉 독일의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중 귀금속 관련 품목  
(Annex 4 to article 13b(2) No. 11 of the VAT Act)

번호	적용 대상 품목	분류기호 (HS code)
1	은(미가공, 반가공 또는 파우더 형태), 은도금한 베이스메탈(반가공 상태 이상으로 추가 가공되지 아니한 것)	7106 및 7107
2	백금(미가공, 반가공 또는 파우더 형태), 백금 도금한 베이스메탈(반가공 상태 이상으로 추가 가공되지 아니한 것)	7110 및 7111 00 00
3	선철 및 경철(블록 또는 기타 기초 형태), 입자 또는 파우더 형태의 선철 또는 경철, 연속 주조 고체, 압연 또는 단조 이전 단계의 형상	7201, 7205, 7206, 7207, 7218 및 7224
4	정제하지 않은 구리(copper)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제련된 구리 및 미가공 구리합금, 구리 모합금, 구리 파우더 및 플레이크	7402, 7403, 7405 및 7406
5	니켈의 매트(mat), 규산화 니켈 및 기타 니켈 야금 중간제품, 미가공 니켈, 니켈 파우더 및 플레이크	7501, 7502 및 7504
6	미가공 알루미늄, 알루미늄 파우더 및 플레이크	7601 및 7603
7	미가공 연(lead), 연 파우더 및 플레이크	7801 및 7804
8	미가공 아연, 아연 파우더 및 플레이크	7901 및 7903
9	미가공 주석	8001
10	기타 베이스메탈(미가공 또는 파우더 형태)	8101~8112
11	미가공 서멧(cermet)	8113 00 20

□ 철스크랩 등 금속 폐기물 또는 재생원료의 경우 16개 세부 품목을 적용대상으로 특정하고 있음

- 대부분 철강 등 금속의 스크랩, 슬랙 및 기타 폐기물로 구성됨
- 금속 이외에도 고무,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도 일부 포함됨

〈표 V-4〉 독일의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중 금속 재생원료 관련 품목  
(Annex 3 to article 13b(2) No. 7 of the VAT Act)

번호	적용 대상 품목	분류기호 (HS code)
1	철강의 제조 시 발생하는 슬래ק	2618 00 00
2	철강의 제조 시에 발생하는 슬래ק, 드로스, 스케일링 및 기타 폐기물	2619 00
3	회와 잔재물(비소, 금속 또는 화합물을 함유한 것에 한하고, 철강의 제조 시에 발생하는 것을 제외함)	2620
4	플라스틱 폐기물, 페어링과 스크랩	3915
5	고무 폐기물, 페어링 및 스크랩 등	4004 00 00
6	파유리 및 유리 기타 폐기물	7001 10 00
7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히거나 포함한 금속의 폐기물과 스크랩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함)	7112
8	철 폐기물과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7204
9	동의 폐기물과 스크랩	7404
10	니켈의 폐기물과 스크랩	7503
11	알루미늄 폐기물과 스크랩	7602
12	연(lead)의 폐기물과 스크랩	7802
13	아연의 폐기물과 스크랩	7902
14	주석의 폐기물과 스크랩	8002
15	기타 비금속으로부터의 폐기물과 스크랩	8101~8113
16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폐기물과 스크랩	8548 10

#### 다. 적용 방법

##### 1) 매입자의 납세의무

- 기본적으로 독일에서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납세의무가 주어지는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임
  -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취급하지 않음

- 다만, 아래와 같은 종류의 공급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사업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인 경우도 포함하며, 이때의 법인은 사업자가 아닌 공법상 법인 등을 의미함
  - 비거주 사업자의 독일 내 용역공급(「부가세법」 13b조 제1항)
  - 담보물의 공급(「부가세법」 13b조 제2항 제2호)
  - 부동산거래(「부가세법」 13b조 제2항 제3호)

## 2) 매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는 일반적 거래와 마찬가지로 해당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임
  -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며 늦어도 해당 공급시기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발행하여야 함(「부가세법」 제13b조 제2항)
-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되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자 납부(reverse charge)”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함(「부가세법」 제14a조 제5항)
  - 해당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함
-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입자납부제도 대상 거래 금액 및 관련 세액을 그 외의 일반 거래와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함
  - 해당 매입자납부제도 대상 거래에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동 매입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서상 매입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처리함

## 3) 관련 의무 불이행시 제재

- 매입자납부제도 관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납부 불이행과 관련된 벌칙 조항을 적용함
  -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의 예에 따라 관련 가산세를 부과함

-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월 1%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또한 납부지연에 따른 별도의 지연이자도 납부해야 하며, 이는 해당 세액에 월 0.5%가 부과됨

#### 4. 핀란드<sup>21)</sup>

-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같이 부가가치세제도 중 소비형이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분리된 형태로 부가가치세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고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는 달리 마진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sup>22)</sup>

##### 가. 도입 목적 및 과정

- 핀란드는 영국의 매입자납부제도 도입목적과 마찬가지로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TIC Fraud)」로 인한 부가가치 세수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의 거래에 대해서 동 제도를 적용함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귀금속이 아닌 금속 및 금속 스크랩이 그 적용 대상이며 관련 법은 「부가가치세법」 제507조(2014년)임

##### 나. 적용 요건

- 적용대상 사업자는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이며 두 사업자 사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금속 및 금속스크랩을 거래할 때 동 제도가 적용됨

21) 핀란드 국세청, [https://www.vero.fi/fi-FI/Syventavat\\_veroohjeet/Verohallinnon\\_ohjeet/Metalliromon\\_ja\\_jatteen\\_myyntin\\_kaannett\(35045\)#1\\_Kaannetty\\_arvonlisäverovelvollisuus\\_](https://www.vero.fi/fi-FI/Syventavat_veroohjeet/Verohallinnon_ohjeet/Metalliromon_ja_jatteen_myyntin_kaannett(35045)#1_Kaannetty_arvonlisäverovelvollisuus_),

22) 핀란드 국세청, [https://www.vero.fi/en-US/Precise\\_information/Value\\_added\\_tax/International\\_commerce/Rules\\_and\\_procedures\\_regarding\\_distance\\_\(30849\)](https://www.vero.fi/en-US/Precise_information/Value_added_tax/International_commerce/Rules_and_procedures_regarding_distance_(30849))

### 1) 판매자의 요건

- 판매자가 사업의 일환으로 금속스크랩을 판매하고 그 판매 행위가 면세가 되는 거래가 아닐 때 동 제도는 판매자에게 적용됨
- 금속스크랩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다른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사업자들로부터 금속스크랩을 수집할 때에도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이전 받음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금속스크랩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건설 사업자나 기계 관련 사업자로부터 금속스크랩을 수집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임
  - 이렇게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되는 때는 일회성의 거래에도 적용 하여야 함
- 단, 금속스크랩 매입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매출이 연간 8,500유로 미만 이거나 비영리단체 또는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매입자납부제도는 적용하지 않음
  -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관련 판매자들이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자 하면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또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금속을 매입 시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 2) 구매자의 요건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등록을 한 사업자인 경우 매입자납부제도는 적용됨
- 단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금속스크랩을 매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이며 매입자가 비영리 단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사업성이 있더라도 금속스크랩 매입자의 연간 매출이 8,500유로 이하인 경우에도 매입자납부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금속스크랩 매입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매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동 제도의 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다. 철스크랩 등 적용대상 및 제도 적용 방법

1) 대상 금속스크랩 및 폐기물

- 동 제도의 적용대상 물품은 금속스크랩과 폐기물의 거래 및 관련 용역 거래에만 한정됨
  - 플라스틱, 종이, 유리 등 다른 폐기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귀금속의 거래에도 적용되지 않음
- 핀란드는 자국 부가가치세법에는 금속스크랩 및 폐기물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EU집행위원회 규정 No 927/2012(of 9 October 2012) 및 일반관세규정 No 2658/871에 따라 금속스크랩 및 폐기물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정하였음
- 매입자납부제도는 다음과 같은 금속스크랩 및 폐기물의 거래에 대해서 적용됨

〈표 V-5〉 핀란드의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적용 대상 품목

번호	적용 대상 품목	분류기호
1	철스크랩 및 폐기물, 철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CN 7204
2	구리	CN 7404
3	니켈	CN 7503
4	알루미늄	CN 7602
5	납	CN 7802
6	주석	CN 8002
7	다른 귀금속 합금으로 구성된 스크랩 및 폐기물 스크랩 및 폐기물의 일부	CN8101-8113 CN
8	일차전지, 기본 배터리와 전기 축전지의 스크랩과 폐기물	
9	매입자납부제도 관련 조항의 제8절에 언급된 다른 비금속 일부 및 텅스텐, 몰리브덴, 탄탈, 마그네슘, 코발트, 비스무트, 카드뮴, 티탄, 지르코늄, 안티몬, 망간, 베릴륨, 크롬, 게르마늄, 바나듐, 갈륨, 하프늄, 인듐, 니오븀, 레늄, 탈륨 및 메트	

## 2) 금속스크랩 및 폐기물 관련 기타 영업 형태

### 가) 철거 작업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처리

- 금속스크랩 및 폐기물 철거작업에 투입된 용역은 금속스크랩 및 폐기물 거래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부가가치세를 처리해야 하며 다른 용역 및 물품의 거래와 상쇄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안 됨
- 따라서 철거용역 제공 및 금속스크랩 및 폐기물 거래는 각각 부가가치세를 처리하며 매입자 및 판매자는 각 용역 및 스크랩 또는 폐기물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함
- 이때 금속스크랩 및 폐기물에 관련한 철거작업 용역에 대해서도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처리해야 함
  - 단, 철거작업에 관련한 대상이 대부분 비금속 관련이고 금속스크랩 및 폐기물이 매우 극소량일 경우에는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 나) 금속스크랩 무상 수증 시 수거수수료에 대한 처리

- 금속스크랩 및 폐기물은 해당 물품의 시장 가격이 낮을 때는 스크랩 증여자가 무상으로 금속스크랩 사업자에게 증여할 때가 있으며, 이때 매입자는 금속스크랩 수집 비용을 청구하기도 함
- 이런 상황은 금속스크랩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제도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용역거래로 처리가 됨
  -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가게를 철거해주고 금속스크랩은 무상으로 받고 해당 스크랩을 수거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사업자에게 청구하는 상황임

### 3) 세금계산서 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

- 금속스크랩 및 폐기물을 거래 시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납부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판매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계속 지님
- 그러나 판매자와 매입자가 합의를 한 경우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만 지는 것이 아니고 분산되어 지게 됨
- 거래에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되면, 세금계산서에는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 (법인의 경우엔 법인 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한다는 표시도 같이 되어야 함
-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임을 반드시 표시해 주어야 함
- 만약 2015년 1월 1일 이후에도 해당 거래에 대해서 실수로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실수를 인지했을 때 즉시 다시 발행해야 하며 기존에 발급되었던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의 수정본임을 표시해야 함
- 매입자는 매입자납부제도에 의해서 납부했던 세액에 대한 환급 권한을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거래 때와 마찬가지로 보유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마찬가지로 판매자도 매입자납부제도에 의해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음

## 5. EU의 마진과세제도<sup>23)</sup>

- EU 회원국들은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라 세금계산서 징수가 어려운 중고품,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에 대해 ‘마진과세제도(margin scheme)’를 적용함
- 과세대상 중개업자(taxable dealer)가 중고품(second-hand goods), 예술품(works of art), 수집품(collector's items) 또는 골동품(antiques)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중개업자의 마진(margin)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마진과세제도로 함<sup>24)</sup>
  - 이때 과세대상 중개업자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재판매를 목적으로 중고품, 예술품, 수집품 또는 골동품을 구매하거나 수입하는 과세사업자를 의미함<sup>25)</sup>
- 마진과세제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중개업자가 아래와 같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중고품 등을 판매하는 거래에 적용 가능함<sup>26)</sup>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가 아닌 비사업자(non-taxable person)
  - 과세대상 중개업자에게 중고품 등을 공급한 과세사업자(taxable person)로서, 면세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당해 중고품 등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경우
  - 과세대상 중개업자에게 중고품 등을 공급한 과세사업자로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에 따라 당해 중고품 등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경우
  - 당해 과세대상 중개업자에게 마진과세제도를 통해 중고품 등을 공급한 또 다른 과세대상 중개업자
- 다음의 거래에도 마진과세제도가 적용될 수 있음<sup>27)</sup>
  - 과세대상 중개업자가 직접 수입한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의 공급거래

23) 박명호 · 이형민 · 유지선, 『주요국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및 마진과세제도 운영현황』, 한국조세연구원, 2012. 6.

24)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3.1

25)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1.1(5)

26)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4

27)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6

- 예술품의 제작자(creators) 또는 상속인(successors)으로부터 예술품을 공급받은 과세대상 중개업자의 예술품 공급거래
  - 과세대상 중개업자가 또 다른 과세대상 중개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예술품의 공급거래로서, 예술품을 공급받을 당시 경감세율(reduced rate)을 적용받은 경우
- 마진과세제도의 적용은 선택사항이므로 마진과세제도를 적용가능한 과세대상 중개업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마진과세제도를 적용하거나 통상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sup>28)</sup>
- 마진과세제도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마진은 중고품 등의 판매가액(selling price)과 매입가액(purchase price)의 차액으로 산정됨<sup>29)</sup>
- 판매가액이란 과세대상 중개업자가 고객 또는 제3자로부터 수령한 대가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바, 당해 거래와 직접 관련된 보조금·세금·관세·부담금·고객이 부담하는 부수적 비용(예: 수수료, 포장비, 운송비 및 보험료 등) 등이 모두 포함됨<sup>30)</sup>
    - 다만, 조기지급에 대한 가격할인, 공급시점에 고객에게 주어지는 가격할인 및 리베이트 등은 제외됨<sup>31)</sup>
  - 매입가액이란 공급자가 과세대상 중개업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말함<sup>32)</sup>
- 마진과세제도는 거래 진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해 과세기간 단위로 마진과세제도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는 포괄적 마진과세제도(global margin scheme)를 허용하고 있음<sup>33)</sup>

28)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9

29)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5

30)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2(1)

31)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79

32)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2(2)

33)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8.1

- 포괄적 마진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일한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해당 과세기간 총판매가액에서 총매입가액을 차감해 산정되는 총마진 금액임<sup>34)</sup>
- 마진과세제도를 적용하여 재화를 공급한 과세대상 중개업자는 본인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를 표시할 수 없음<sup>35)</sup>
  - 이는 과세대상 중개업자의 마진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이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사업자는 마진과세제도가 적용된 재화의 취득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sup>36)</sup>
- 통상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와 마진과세제도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과세대상 중개업자는 각 방식에 따른 거래내역을 장부에 별도로 나타내야 함<sup>37)</sup>
  - 장부에 기재할 내용은 각 회원국이 도입한 부가가치세제에 따름
- 각 회원국은 중고품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이나 손실을 계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음<sup>38)</sup>
  - 예컨대 마진율이 판매가격의 일정비율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동종업종의 정상마진율을 기준으로 마진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있음

---

34)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8,2

35)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25

36)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23

37)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24

38) EC Directive 2006/112/EC, Article 318,3

6. 국제비교

〈표 V-6〉 주요국의 매입자 납부세액 국제비교표

구분	우리나라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부가가치세의 기본 시스템	소비형이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분리됨	소비형이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분리됨	소비형이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분리됨	소비형이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분리됨	소비형이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분리됨
매입자납부제도 <sup>1)</sup> 의 도입 시기	2008년 1월 1일	2007년 6월 1일	2007년 6월	2003년	2015년 1월 1일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 목적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 현상 방지 및 지하경제 양성화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조직에 의한 재활동 금속폐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들이 거래 대금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등 조세탈루 행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자납부제도의 적용대상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입자납부제도 적용 대상 물품을 거래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법에서 명시한 재화를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령에 명시된 재화를 거래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일 내 거주자인 사업자들 간의 거래에 적용됨</li> <li>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취급하지 아니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핀란드 세법에서 명시한 재화를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li> </ul>

〈표 V-6〉의 계속

구분	우리나라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매입자납부제도의 적용대상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에 금지금 및 금제품</li> <li>• 2014년 1월 1일 구리스크랩 추가</li> <li>• 2015년 7월 1일 금스크랩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0 이상의 휴대폰 및 컴퓨터칩 공금</li> <li>• 탄소배출권 및 관련거래, 전기, 가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스트리아의 '폐기물-부가가치 세법시행령의 별표'에 따른 제화</li> <li>• 철, 플라스틱, 파지, 냄마, 유리, 귀금속 등 금속 이외의 물품도 포함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거래 전반 및 건물의 건축·수리·유지·철거 등의 용역 공금</li> <li>• 탄소배출권 거래, 빙난방 공금, 특정 재생원료, 철 및 비철 금속 폐기물, 플라스틱·고무 등의 폐기물, 전지 폐기물</li> <li>• 건물 및 건물 일부분에 대한 청소용역 등 일부 용역</li> <li>• 거래대금 5,000유로 이상의 이동전화기 및 일부 IC</li> <li>• 게임 콘솔, 태블릿 컴퓨터 및 귀금속 공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 구리, 아연, 납 등 귀금속이 아닌 금속의 스크랩 또는 폐기물 및 관련 용역</li> <li>• 플라스틱, 종이, 유리 등 다른 폐기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귀금속의 거래에도 적용되지 않음</li> </ul>

〈표 V-6〉의 계속

구분	우리나라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매입자납부제도의 신고 및 납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물품을 거래 시 지정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고 거래가 있을 때마다 계좌를 반드시 이용함</li> <li>•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계좌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환급에 대해 특별히 부여하여 사업자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자는 최초로 공급이 이루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웹기반의 RCAL 시스템으로 국제청에 통지</li> <li>•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자 납부제도 판매목록을 작성</li> <li>• 매입자는 매입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자는 매입자 납부방식의 계산서를 발행</li> <li>• 공급자는 월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세의무가 이진된 거래를 구분하여 신고</li> <li>• 매입자는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일 반거래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20%의 부가세 간주납부와 간주매입세액공제를 동일한 신고서에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되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자납부 (reverse charge)” 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함</li> <li>•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입자납부제도 대상 거래 금액 및 관련 세액을 그 외의 일반 거래와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에 매입자납부 제도가 적용되면, 세금계산서에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한다는 표시를 해야 함</li> <li>• 매입자 및 판매자는 매입자납부제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거래 때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 권한은 계속 유지함</li> </ul>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방식	의제매입세액공제	마진과세	마진과세	마진과세	마진과세

주: 1) 이 표에서의 매입자납부제도는 비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매입자납부제도가 아니라 특정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의미함

## Ⅵ. 시사점

### 1. 철스크랩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의 긍정적 효과

- 연구 결과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가가치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EU의 주요국들은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 등을 방지하고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각 주요국들은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 시 적은 범위의 상품에 도입했다가 점차 제도를 보완하고 적용 대상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매입자납부제도가 어느 정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연구대상 주요국에서 매입자납부제도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고 일반적으로 거래가 많은 금속스크랩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은 다수의 거래 사업자 및 개인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도 매입자납부제도가 작동하는 것을 의미함
-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철스크랩 시장에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다른 주요국처럼 제도의 관리는 가능할 것이며 징수한 매출부가세를 탈루하는 폭탄업체들 및 체납사업자들에게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것을 계산하고 사업을 하여 철스크랩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의 정상화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철스크랩 시장에 도입할 때에는 우리나라와 주요국과는 부가가치세제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 후 기존 제도를 보완 후에 도입해야 할 것임

## 2.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개정 필요성

- 우리나라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현재 매입가액의 5/105를 의제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매입자에게 공제를 해주는 반면 연구대상 주요국들은 중고품에 대해서 마진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두 가지 제도는 큰 틀에서는 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제도 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해당 요건이 미비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동시에 해당 매입은 세무상 원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무자료 거래가 생기는 원천이 됨
  - 매입원가를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들은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할 경우 과대계상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매입자납부제도에 편입을 거부하고 계속 무자료 거래를 하게 될 것임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제도 자체로는 매입에 대해서 모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제에 필요한 정보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입액의 상당 부분은 공제가 안 되고 있음
- 주요국의 마진과세제도도 판매자(수집자)에 대한 주소 및 성명에 대한 기초 정보는 수집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판매자의 모든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고 있지 않으므로 거래가 제도에 편입되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음
  - 판매자의 모든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정보는 노출 시 판매자에게 추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올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상공들은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필요한 판매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으며 이는 조사 대상국과의 주요한 차이임
- 따라서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실제 매입액에 대해서 전부 공제가 가능하고 더

불어 매입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하여 거래를 양성화시켜 부가가치세 제도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왜냐하면 매입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다음 단계의 매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임

□ 수정 방식은 판매자 개인의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매입자의 납세순응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가의 세원을 투명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매출과 연계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이 방식은 매출에 비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임

○ 이 방식은 마진과세제도의 형식을 가지지만 주요국의 제도와 다르게 매입에 대한 기장의무를 훨씬 완화시켜 소상공들이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세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현재는 수집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지만 개정 시에는 이런 사항은 필요없이 단순하게 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한 매출을 의제매입의 기준으로 잡는 것임

○ 이러한 방식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소상공은 정당하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매입원가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기존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유지 및 검토에 투입하였던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매출이 125만원이고 20만원의 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업계 평균이 추산될 경우 매입액을 105만원으로 보고 매입액의 5/105인 5만원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임

□ 동 방법하에서 소상공은 실제 매입에 대해서 대부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매입원가도 인정받게 되어 비정상인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하여 신고할 유인을 가지게 됨

○ 현재 매입액의 많은 부분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 제도는 소상공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임

- 결국 제도 개정의 효과로 무자료 거래 상품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 영향으로 철스크랩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다른 요인들로 인한 무자료 거래 상품도 감소하게 될 것임
- 또 다른 효과로는 철스크랩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하경제를 감소시킴으로써 국가의 세수 증대가 예상됨

### 3. 철스크랩에 대한 전용계좌의 전면 사용 재고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의 소상공들에 의해서 수집되는 구리스크랩은 전용계좌를 운영할 수 있는 좀더 큰 규모의 사업자에게 자료 없이 넘겨지는 상황으로서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 이런 현상은 소상공들의 탈세 의지보다는 소상공들이 실질적으로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 소상공들은 본의 아니게 무자료로 거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넘겨진 구리스크랩은 무자료 거래의 원천적인 상품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 결과적으로 구리스크랩 시장에서 전용계좌를 도입하고 매입자납부방식을 시행한 것은 기존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던 소상공까지도 무자료 거래를 하게 만든 측면이 있음
- 구리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시행에서 나타난 부작용은, 구리스크랩과 같은 방식인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철스크랩에도 도입 시 더욱 크게 확대될 수 있음
  - 그 이유는 구리스크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로 빠르게 움직이는 철스크랩의 유통을 소상공의 사업자들이 지금보다 새롭고 복잡한 방식으로 기장을 하고 세무처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임
  - 그리고 구리스크랩처럼 전용계좌를 도입 시에는 납세협력비용은 구리스크랩보다 훨씬

씬 클 것이고 사업자들은 그 협력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제도 속에 안착하기 보다는 복잡하지 않고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무자료 거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큼

- 이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으며 그 결과는 현재보다 더 많은 무자료 거래의 발생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의 탈루 규모가 커지는 제도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
- 따라서 철스크랩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시 일률적인 전용계좌 사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처리의 변경은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는 제도의 취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 시 신중함을 기해 설계해야 함
- 연구 대상 주요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새롭고 정교한 지정계좌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의 틀 내에서 사업자들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제도를 설계하고 기존 제도 또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2013.

김재진, 『철스크랩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0.

박명호 · 이형민 · 유지선, 『주요국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및 마진과세제도 운영현황』, 한국조세연구원, 2012. 6.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생원료(동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의 독일 등 해외사례 조사」, 2013. 2.

European Commission,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and impact of the optional ‘Reverse Charge Mechanism’ within the EU VAT system,” November 2014.

“Specified Goods and Excepted Supplies, Order 2014,” The Value Added Tax, Section 55A.

“Specified Goods and Excepted Supplies, Order 2010,” The Value Added Tax, Section 55A.

신한은행 구리스크랩, 금지금, 금제품관련 매입자납부제도 홈페이지, [www.cu-account.co.kr](http://www.cu-account.co.kr), <http://www.goldaccount.co.kr/>

KPMG, <http://www.kpmg.com>

스크랩워치

한국철강협회

EC Directive 2006/112/EC

핀란드 국세청, <https://www.vero.fi>

구리스크랩등 매입자납부제도 안내:

<http://www.seeyou-account.co.kr/system/systemIntroduce02.jsp>



세법연구 15-05

**철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효과 및 문제점 검토**

---

2015년 8월 23일 인쇄

2015년 8월 30일 발행

저 자 김재진 · 홍성열 · 이형민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ISBN 978-89-8191-783-8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